

# 디자인심사동향

D e s i g n  
E x a m i n a t i o n  
R e p o r t | MAY 2019  
Vol. 13('19.5)

- | 재미있는 디자인권 이야기\_디자인 역량에 걸맞는 보호제도
- | 심사 동향\_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안) 일부개정 추진
- |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증명서류」제출 편의 도모
- |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도면심사 요건 완화
- | 창작자 추가·정정 기회 확대
- | 공지사항\_한 – 중 – 일 디자인포럼 참가
- | 물품별 디자인분쟁 사례집 발간 예정
- | 디자인이슈\_중국 전리법 개정(안) 경과와 디자인관련 주요 내용
- | 글자체(디자인보호법)와 폰트(저작권법) 디자인의 보호 비교
- | 디자인통계\_한국–일본 디자인출원 비교

## 디자인 역량에 걸맞는 보호제도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지난 3월, 우리나라 디자인등록이 100만호를 돌파했다. 영광의 100만호 디자인 등록은 ‘안전모’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1948년 한복을 장식하는 ‘반휘장 옷고름’이 디자인 1호로 등록된 이래 불과 71년만의 일이다. 얼마 전 일본 특허청이 2018년도 연보를 발표 하였는데, 우리 디자인출원이 일본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디자인출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한 해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넘게 일본의 2배가량 디자인 출원량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에 비해서도 1.5배가량 많다. 우리나라 디자인의 출원이 이정도 수준에 올라선 것은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1981년까지도 연 1만건을 넘지 못하다가, 1987년부터 2만 건을 넘어섰다. 불과 6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난 셈이다. 1990년대 이후로는 디자인출원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0년대 접어들어서부터 6만 5천건 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는 우리 사회전반에 디자인 인식이 변화된 시점이다. 1983년, 금성사(LG)는 국내최초 디자인 종합연구소를 설립하고, 같은 해 삼성전자와 금성사는 각각 산업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며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각 기업들이 CIP(기업 이미지 통합작업)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회사 내에 디자인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1985년 상공부는 ‘GD’마크를 제정하여 우수디자인을 장려하였고, 공산품의 디자인을 크게 향상시켰다. 대략 우리 디자인 출원량 증가와 시기를 같이 한다.

이 즈음 디자인의 수요 증대와 더불어 각 대학에 디자인학과가 많이 설치되었다. 응용미술, 장식미술 등으로 불리던 대학 전공명칭도 ‘디자인’으로 바뀌고, 시각디자인, 공업디자인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최고수준의 디자인전공자가 배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견줄 만큼 디자인강국으로 발전했다. 더불어 디자인제도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자인출원 시스템을 갖추었다. 온라인 뱅킹을 한번 해본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집에서 디자인 전자출원시스템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3D파일을 그대로 등록하는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다각적인 세제감면으로 출원인의 편의를 돋고 있다. 한국의 디자인출원 수수료는 매우 저렴하다. 개인은 70%까지 출원료가 감면되며, 여러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출원 및 최초 3년 설정등록 비용이 총 5만원 수준이다. 이런 수준의 수수료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운영하기 힘들다. 우리 특허청에 독립운영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세수를 조정하는 등 운영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최근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디자인 보호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나 화상디자인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도 손으로 만져지는 디자인물품만 보호한다. 당장 그래픽디자인이나 캐릭터디자인 조차도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가상키보드나 디지털 그래픽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 디자인보호법 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시장변화에 발맞춘 보호시스템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야만 디자인강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변화하는 산업에 발맞추고, 한국의 디자인 강국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안) 일부개정 추진

### ■ 개정 배경 : 디자인 출원 절차 간소화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위해 보정서·답변서 작성과 별도로 '서류제출서'를 추가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두 짹의 디자인이 한 쌍을 이루는 통상적인 물품의 출원에 대해 과도한 의견 통지 및 출원인의 보정 부담 발생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도 창작자 추가·정정은 확인서류 제출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여 진정한 창작자 보호 필요

### 01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증명서류」 제출 편의 도모 (안 제34조)

### ■ 개정 이유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는 별도로 '서류제출서\*(특허법시행규칙 제1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나,
  - 출원인은 보정서 또는 답변서 작성과 함께 '서류제출서'를 추가로 작성하면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번거로움 발생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신규성과 창작성을 적용할 때는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제36조 제1항 본문)

\* (서류제출서) 서류의 유형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는 증명서류'임을 표시하고 출원인, 대리인, 출원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

### ■ 개정 내용

- 출원 시\* 뿐만 아니라 의견통지에 대한 보정서 또는 답변서 제출 시에도 서류제출서 없이 증명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출원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서' 제출 불요

## ■ 개정 효과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증명서류 제출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고, 그 취지를 작성한 서류(보정서 등)에 첨부만으로 출원인의 서류제출 절차 간소화 및 편의 제고

## 02

###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도면심사 요건 완화 (안 별표 2)

## ■ 개정 이유

-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한 짹만 도시했을 경우, 나머지 짹에 대한 설명은 필수기재 사항으로 기재가 없을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

#### 시행규칙 별표 2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 11번)

11.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한 짹의 형태만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짹을 생략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신발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좌우 대칭의 한 쌍으로 이루어져 사용되며 원쪽 신발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일반적으로 대칭인 두 짹의 디자인이 한 쌍을 이루는 통상적인 물품의 출원(신발)에도 적용하도록 예시를 들어 과도한 의견 통지 및 출원인의 보정 부담 발생

## ■ 개정 내용

-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한 짹의 형태만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짹을 생략하는 경우,
  - 당 업계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쌍의 물품의 경우 생략된 도면에 대한 디자인 설명의 기재가 없어도 인정
-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디자인 설명에서 기재 하도록 하는 도면심사 요건 완화 및 예시 사례 변경

## ■ 개정 효과

- 신속한 심사처리가 가능하고 출원인의 보정 부담 해소

## 03 창작자 추가 · 정정 기회 확대 (안 제50조)

### ■ 개정 내용

- 디자인등록 결정 후에는 출원서에 기재한 창작자의 누락 또는 오기가 명백한 경우 한하여 창작자 추가·정정이 가능 하나,
  - 진정한 창작자 보호를 위해 간소화된 구제 절차 마련 필요

#### 시행규칙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 출원인의 착오로 창작자중 일부창작자를 누락 또는 오기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여부결정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 가능
- 출원서에 적혔던 창작자가 누락되거나 오기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여부 결정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이 가능함

### ■ 개정 내용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도 창작자 확인서류가 제출될 경우 등록증 등에서 창작자 추가·삭제를 폭넓게 허용
  - 디자인권자 및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첨부

### ■ 개정 효과

- 창작자 추가·정정 제한 완화를 통해 진정한 창작자 보호

## 한 – 중 – 일 디자인포럼 참가

- (일시/장소) 2019년 5월 26일(일), 중국 우수 국제엑스포센터
- (주제) “가전제품의 디자인보호(The design protection of Home Appliances)”
- (내용) 한국,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가전제품 제조사의 디자인지재권 전략을 논의하고, 한 – 중 양국간 디자인제도, 심사품질 관리 현황 정보 공유

한·중·일 디자인포럼 5.26 (일)	각국의 디자인 보호제도 현황
	각국의 가전제품 보호
	기업의 가전제품 디자인 보호전략
	가전제품 관련 산업계와 간담회
한·중 디자인전문가회의 5.27(월)	양국 디자인 제도·품질관리 현황
	가전제품 디자인 보호 현황 등 논의

\* 한중일 디자인포럼은 3국 순회 개최 행사로,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임

## 물품별 디자인분쟁 사례집 발간 예정

- (개요) 개인 디자인 출원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자인출원에 비하여 **디자인분쟁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기존 디자인판례집은 판결문 원문을 요약하는데 그쳐 용어가 생소하고 법리 이해도 부족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 (내용) 웹진 ‘디자인맵’을 통하여 정리된 최근 10년간의 국내외 디자인 분쟁사례 등을 취합, ‘**물품별 디자인 분쟁 사례집**’ 발간
  - 국내외 디자인판례 중 동일·유사판단, 창작성 판단, 부정경쟁 판단, 권리관계, 우선권, 신규성 등에 대한 대표사례 약 100건 수록 예정
- (활용)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6월)

## 중국 전리법 개정(안) 경과와 디자인관련 주요 내용

### ■ 개정 목적

-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 강화, 특허 실시와 활용 촉진 및 특허권 수여 제도의 개선

### ■ 전리법 개정 경과

- 제4차 개정안 의견수렴('15) → **국무원 상무회의 통과**('18.12.5, 현재 단계) → 최종 '전국 인민 대표회 상무위원회' 승인으로 확정(예정)

\* 중국 특허법은 1985년 제정, 1992년·2000년·2008년에 세 차례 개정

### ■ 디자인 관련 주요 내용

#### 〈기간 연장〉

- 헤이그협정의 가입을 위해 디자인특허권의 보호기간을 15년으로 연장(현행 10년)(제43조 제1항)
- 특허권 침해의 소송시효 및 특허공개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소송시효를 3년으로 연장(현행 2년)(제75조)

#### 〈권리자 보호 강화〉

- 국내우선권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에 디자인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국내에서 디자인특허출원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30조)
  - 해외 우선권제도와 동일한 구조이며, 우선권주장을 위한 최초 출원서류 부분제출기간은 3개월로 종전과 동일(제31조)
- 고의적인 특허침해행위에 대해 배상액을 1~5배로 할 수 있게 하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새로 도입, **법정배상액**을 10만~500만 위안으로(종전 1만~100만 위안) 상향(제72조 제1항 및 제2항)

\* **징벌적 배상제도** : 동일한 권리권을 반복 침해하거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권리권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 중국 상표법에서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법정배상액이 6배 상향된 바 있음

\* 현재,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실제 손실액으로 계산하되, 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득으로 계산하고, 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전리 실시료로 산정하나, 모두 어려운 경우, 권리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에 따라 법정배상액인 1만~100만 위안(약 170만~1억 7,000만원) 내에서 결정하도록 할 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없음(제65조)

- 권리자의 입증책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침해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제72조 제3항)
  - \* **권리자의 입증부담 완화** : 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권리자가 입증에 노력하였음에도 침해자가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장부나 자료를 소지한 상황이라면,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함

#### 〈 기존 2015년 전리법 개정안에서 삭제된 내용 〉

- **부분디자인 제도 도입(안) 삭제**
- 특허심판에서의 직권조사 강화 내용 삭제
- 고의적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의 직권조사 강화 내용 삭제
-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특허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특허침해에 대한 연대책임(간접침해) 규정 삭제

## ■ 시사점

- 디자인보호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곧 헤이그 국제디자인 도입이 예상됨
- 국내 우선권제도, 각종 서류제출기한 연장, 배상금액 상향 등으로 **중국내 디자인보호 편의 증대** 기대
- **부분디자인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디자인보호범위 확대는 제한적임

## 글자체(디자인보호법)와 폰트(저작권법) 디자인의 보호 비교

### ■ 글자체와 폰트

- 글자체(typeface)란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컨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을 말함
- 컴퓨터 폰트 파일은 글꼴을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의미

### ■ 저작권법상 서체도안의 저작물성

- (판례)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서울고법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

\* 글자체 디자인 등은 보호대상(X), 서예글씨는 보호대상(O)

#### 〈글자체 디자인의 저작물성 부정〉(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사건개요) 1993년 7월, 원고 측은 문화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 안○○ 등이 자신들이 개발한 글자체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현행 저작권법상 글자체 디자인은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이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그러나 고등법원 역시 저작물성을 부인하여 원고 측은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판결)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서체도안들은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등록관청이 그 서체도안에 관한 등록신청서 및 제출된 서체도안 자체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그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등록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다.

### 〈서예의 저작물성 인정 판례〉(“축제사건”, 1997.9.24 선고, 97나15236 판결)

(사건개요) 서예과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는 궁체에 대비되는 필체로서 일반 백성들의 글씨체에 바탕을 두고 글씨체가 독특하며 개성이 있는 ‘민체’를 연구하여 1994년 5월 경 제7회 한국서예청년작가전에 ‘민체’로 작품화한 춘향가를 출품. 피고인 영화 주식회사와 출판인은 각각 영화 ‘축제’와 소설 ‘축제’의 제목 및 홍보물 등에 원고의 사용 승낙과 성명 표시 없이 이 사건의 글자를 사용

(판결) 고등법원은 “원고가 쓴 위 춘향가의 서체는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지적·문화적 정신활동의 소산(所産)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글자를 포함한 위 춘향가의 서체에 대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

## ■ 일본 사례

(사건개요) 원고인 (주)寫研은 인쇄용 서체 「고나U」, 「고나M」을 자사의 상품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주)모리자와 역시 같은 모양의 인쇄용 서체로 「신고딕체V」, 「신고딕체L」을 소유. 원고는 피고의 서체가 자사의 서체를 무단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 1993년에 저작권 침해에 기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대판지방법원에 제기함. 그러나 1997년 기각 판정을 받았고, 1998년 항소심에서도 기각됨. 이에 원고는 최고재판소에 항소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됨.

(이상정, “글자체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문광부, 2001.12), 27면.)

### ● (판단)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0년 9월 7일, 고나서체 사건(ゴナ書体事件) 항소심에서 **인쇄용 서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독창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 저작물성 부정**

- 서체 디자인이 일본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서체디자인 자체가 예술적 평가 및 감상의 대상이 되는 미적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함
- 서체에 대해서는 독창성 요건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디자인은 실용성의 측면에서 예술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한 독창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을 기각

\* 결국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서체는 단지 기존의 고딕 서체의 수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일본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 서체폰트 파일의 보호

### ● 판례상 서체폰트파일은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됨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가지며, 복제권 · 배포권 · 공중송신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도 발생
- 폰트 파일은 그 자체가 프로그램저작물인 한도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개변하지 않는 한,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판례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09.7. 폐지 이후 저작권법과 통합됨

(판례2) (1) 서체파일은 특정한 서체의 글자의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결과’가 존재하고, (2) 서체파일의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의 요체인 소스코드에 해당하며, (3) 글자의 좌표값을 설정하고 이를 직선 또는 곡선으로 이동·연결시킨 후 폐쇄부를 칠하라는 명령 등은 서체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연산 작용을 실행시키는 ‘일련의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것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 ■ 폰트를 데이터의 집합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로 판단하는 이유

-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임
-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 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 값과 좌표 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

## ■ 디자인보호법 내에 글자체 디자인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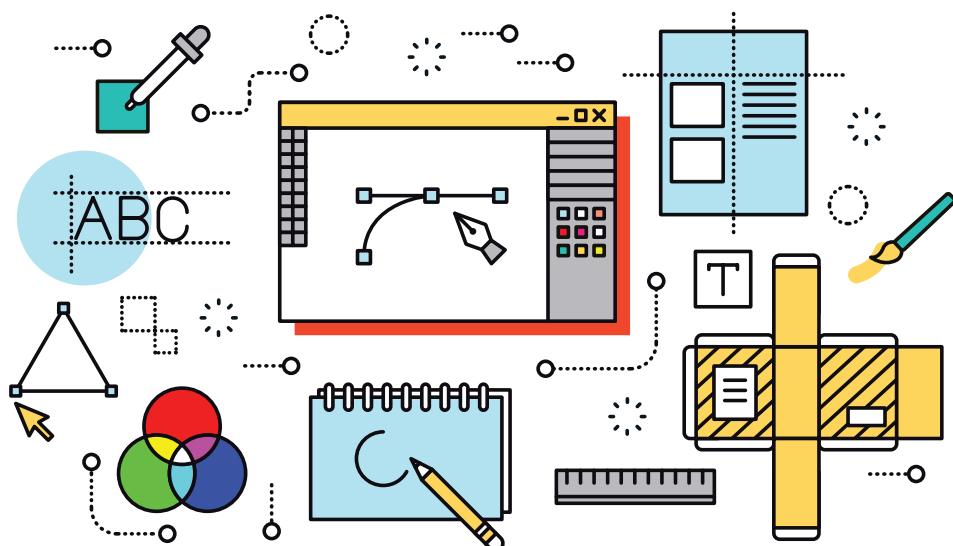
- 새로운 글자체를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 시간, 창작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04년까지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음
- 저작권법에 글자체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용적 기능과 분리해서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았고, 다만 “서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저작권법(종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함
-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성의 결여로 보호해 오지 않다가, 대법원 판례 이후 글자체개발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의 민원제기 등으로 그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2005.7.1. 부터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게 됨

## ■ 디자인보호법에서의 글자체 보호

- **(정의)** 글자체 디자인 (type-face design, typograph design)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벌의 글자꼴(숫자, 문장 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 디자인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 **(특징)** 물품성이 부재한 디자인으로 법2조 정의규정에서 별도 한정열거하여 정의하고 있음
- **(등록방법)** 도면요건을 디자인보호법 별표1에서 별도 규정
- **(등록효과)**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함
- **효력제한**
  - 타자 ·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상 글자체 디자인 보호의 비교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보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벌의 글꼴(숫자, 문장 부호 및 기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컴퓨터 폰트 파일</li> <li>캘리그라피(서예) 등 미적감상대상에 해당하는 글자체</li> </ul>
보호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꼴전체로서 업으로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캘리그라피 등 미적감상대상으로 미술저작물에 해당할 경우</li> </ul>
등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면</li> <li>일반디자인과 동일요건으로 심사 (신규성, 창작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식 없음</li> </ul>
보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꼴전체로서 ‘업’으로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모든 저작권의 보호</li> </ul>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꼴 전체로서 업으로서 실시할 경우 침해로 판단되나, 침해 구성을 위한 <b>실시형태가 불명확함</b></li> <li>파일형태의 온라인 배포/전송등 간접침해 불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폰트파일 침해시 처벌(글꼴을 이용 하더라도 폰트파일 소프트웨어가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벌 불가)</li> <li>파일형태 배포/전송 등 모두 침해 인정</li> </ul>



## 한국 – 일본 디자인출원 비교

### ■ 한국(KIPO)과 일본(JPO)의 디자인 출원 비교 ('18 JPO 공개연보 기준)

- JPO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2018년 특허출원 규모는 한국의 1.5배 수준인데 반해, 디자인출원 규모는 한국의 절반 수준

〈 KIPO, JPO 지재권 출원 현황(2018년) 〉

구 분	KIPO	JPO	차이(KIPO-JPO)	비율(JPO/KIPO)	비고
특 허	209,992 건	313,567 건	-103,575 건	1.49 배	-
실용신안	6,232 건	5,388 건	844 건	0.86 배	-
디 자 인	63,680 건	31,406 건	32,274 건	0.49 배	-
상 표	200,341 건	184,483 건	15,858 건	0.92 배	다류상표 반영 시* JPO가 KIPO의 2.1배
합 계	480,245 건	534,844 건	-54,599 건	1.11 배	-

### ■ 디자인 분류별·출원인 유형별 분석

- (분류별) 디자인 분류별로 보면, 한국이 의류·악세사리, 원단(직물지), 사무용품 등 일부심사 대상에서 일본보다 2~4배 이상 많이 출원

〈 일부심사 대상 디자인 분류별 KIPO, JPO의 출원 현황(2018년) 〉

디자인 분류	KIPO	JPO	차이(한국-일본)	비율(한국/일본)
의복 및 신변품(악세사리 등)	8,730 건	3,176 건	5,554 건	2.7 배
사무용품, 판매용품(포장지 등)	7,623 건	3,940 건	3,683 건	1.9 배
기타 기초제품(직물지 등)	6,246 건	1,422 건	4,824 건	4.4 배

- (출원인유형별) 한국의 디자인출원\*은 개인·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82.3%)하는 반면에 일본은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대기업 40.5%)
- (다출원건) 한국은 의류·악세사리 등 유행에 민감한 소비재 관련 출원이 많으며, 일본은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체 관련 출원이 많음

〈 KIPO, JPO의 디자인 다출원 상위(TOP3) 물품 분류(2018년) 〉

순위	KIPO		JPO	
	디자인 분류	전체 출원 대비 비중	디자인 분류	전체 출원 대비 비중
1	의복 및 신변품(악세사리 등)	13.8%	전기전자기계	14.9%
2	사무용품, 판매용품(포장지 등)	12.0%	사무용품, 판매용품	12.3%
3	주택설비용품(조명기구 등)	11.5%	생활용품	12.2%